

국토교통부 지침 호

「보행교통 개선지표 수립지침」(국토해양부지침 제2012-44호, 2012.6.7) 중
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
2013년 4월 일

국토교통부장관

「보행교통 개선지표 수립지침」 일부개정안

보행교통 개선지표 수립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제4호, 제16조제4항, 제17조제1항·제5항, 제19조 및 제20조제1항 중
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하고, 별지 1 중 “국토
해양부”를 각각 “국토교통부”로 한다.

부칙

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